

4-5-2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장학제도 마련 및 지급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8.8>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우리대학교내에 장학금지급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처장, 교무처장, 각 학부장, 총장이 추천한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장학위원회의 임기는 우리대학교 각종위원회 임기에 따른다.

제5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심의
2. 학교 및 외부 장학금(불특정)액수 배정
3. 장학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수의 심의, 결정
4. 추천된 지급대상자의 심사와 확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대상) ① 우리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2. 입학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3. 교육보호 대상자 및 직계자녀
4.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5. 학교활동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6.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신설 2011.09.07><개정 2023.8.8>

1. 미등록 휴학자
2. 징계처벌을 받고 있는 자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단, 4학년 2학기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7학점 미만인 자

제7조(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 장학금 종류는 다음과 같고, 선발 기준 및 장학금액은 별표1(장학금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① 교내장학금<개정 2009.01.28, 2011.09.07, 2012.11.14, 2013.3.12, 2015.11.10, 2018.12.4., 2023.8.8., 2025.2.6>

1. 변마지성적우수장학금

소정의 전 학기 학점을 이수하고 학업 성적이 실점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지급한다.

2.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가.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지급한다.(단, 동점자의 경우 1순위는 수
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역의 백분위 합산 총점이 높은 자, 2순위는 수학능
력시험 탐구영역(최고점 1과목)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로 정한다)

나. 편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지급한다.

다. 등록포기에 따른 장학생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
지 않는다.

3. 교육보훈장학금

보훈장학금 : 보훈청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혹은 그 직계 자녀로서 교육보호대
상자 중 학업성적이 실점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4.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우리대학교 교직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
한다.

5. 격려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유형 승인자에게 해당학기 소득분위 따라 지급한다.

6. 공로장학금

학생 자치단체 및 부속기관의 회장, 임원 혹은 기타 학교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게 등록금과 상관없이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학생에게 등록금고지
서감면 없이 직접 지급한다).

7. 디아코니아장학금

대학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우리대학 채플 혹은 대내외 기독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교목실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학비감면과 별도로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8. JU봉사장학금

해당 학기 봉사시간이 많은 학생 중에서 지역협력센터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9. 특별장학금

폐과 결정된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10. 목회자가족장학금

당국에 등록된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가족에게 지급한다.(노회의 미자립교회증명

서 제출자만 해당되며, 가계곤란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 해당된다.)

11. 형제자매장학금

우리 대학에 형제·자매 2인 이상 모두 재학 중 일 때 1인에게 지급한다.

12. 사회배려장학생장학금

사회배려계층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나. 장애대학생장학금 :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등록된 장애인 학생에게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다문화가정장학금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본인 및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3. 만학도장학금

학기개시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학생에게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14. 국가근로장학금(교비대응)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로서 교내에서 근로를 하였을 경우 장학금을 학비감면과 별도로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5. 사회배려학생도우미장학금

사회배려학생도우미로 활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을 학비감면과 별도로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6. 역량장학금

당해연도 학생 역량 프로그램(센터) 참여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 졸업인증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학비 감면과 별도로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 외부의 기탁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급한다. 단, 기탁자 또는 기탁기관에서 생활비 장학금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8.24., 2025.2.6>.

제8조(신청기한 및 방법)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성적장학금은 신청서 제출을 제외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부대서류 각 1부

2. 교육보호 장학금 신청자는 1항외에 국가 유공자 자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재학중 최초의 신청서에 한함)

3.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복교<개정 2015.10.28, 2023.8.8>
- 2) 재 입 학
- 3)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 4) 근로성적 “F”의 평가를 받은 근로 장학생
- 5) 학칙을 위반한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제9조(지급시안의 심의와 승인) 학생처장은 매 학기 장학금 배정 종목과 액수 및 수혜 자격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지급 기준액) 우리대학교의 장학금 기준액은 매 학기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6>

제12조(지급 방법)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공제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단, 등록금 납입기간 이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지급방법을 예외로 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원칙) ① 교내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장학금 장학금은 등록금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개정 2011.1.19., 2013.8.26., 2014.8.8., 2015.10.28., 2023.8.8.>

제14조(군소 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장학금의 배당액이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될 지급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군소 장학금의 통합을 비롯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총장이 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 환수) 장학금을 수혜 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 한다.<개정 2008.3.2, 2015.11.10>

1. 자퇴 및 제적 등의 사유로 인해 학적을 상실한 경우
2. 공로를 인정하여 선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혜 후 휴학한 경우(홍보대사 장학금 등)

제1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교내·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외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해당 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4]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 제1항 제2호 입학성적장학금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종전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

장학명	종류	선발 기준	금액	비고
2.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입학성적우수 1종~4종 (수시일반전형)	1종: 성적 1등 (4년 지급, 단 직전 학기 성적 3.8점 이상)	등록금 전액면제	
	입학성적우수 1종~4종 (수시지역인재전형)	1종: 성적 1등 (4년 지급 단, 직전 학기 성적 3.8점 이상)	등록금 전액면제	

[별표1]

장학금기준표<개정 2024.9.2., 2025.2.6>

① 교내장학금

장학명	종류	선발 기준	금액	비고
1. 변마지성적 우수장학금	변마지 성적우수 장학금 1종-5종	1종: 학년별 성적 1등(최우수자)	한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편입생은 학적상 학년 기준에 따름
		2종: 학년별 성적 2등~4등(3명)	2,000,000	
		3종: 학년별 성적 5등~9등(5명)	1,500,000	
		4종: 학년별 성적 10등~16등(7명)	1,000,000	
		5종: 학년별 성적 17등~24등(8명)	500,000	
2.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수시 일반전형 1종~4종	1종: 성적 1등(최우수자)	등록금 전액면제	입학학기만 해당
		2종: 성적 2등	2,500,000	
		3종: 성적 3등~4등(2명)	2,000,000	
		4종: 성적 5등~8등(4명)	1,500,000	
	수시 지역인재전형 1종~4종	1종: 성적 1등(최우수자)	등록금 전액면제	
		2종: 성적 2등 (차석)	2,500,000	
		3종: 성적 3등	2,000,000	
		4종: 성적 4등	1,500,000	
	수시 기회균형전형	면학장학금: 기회균형 성적 1등(정원내·외 구분없음)	1,500,000	
	정시 일반전형 1종~4종	1종: 성적 1등(최우수자)	등록금 전액면제	
		2종: 성적 2등 (차석)	2,500,000	
		3종: 성적 3등	2,000,000	
		4종: 성적 4등	1,500,000	
일반전형편입학		일반전형 편입학 성적우수: 입학성적 1등	500,000	
학사전형편입학		학사전형 편입학 성적우수: 입학성적 1등	500,000	
의료인력양성전형 편입학	의료인력양성전형 편입학 성적우수: 입학성적 1등	500,000		
3. 교육보훈 장학금	보훈장학금	국가보훈처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	교비, 국비 50% 전액지급	
4.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우리대학 교직원의 자녀(직전학기평균80점 이상)	등록금 전액면제	
5. 격려장학금	소득분위 1종~4종 :저소득	1종: 국가장학소득분위(0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1유형 승인 학생	800,000	단, 국가장학금 제외하고 지급, 2학기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가능
		2종: 국가장학소득분위(1-4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1유형 승인 학생	500,000	
		3종: 국가장학소득분위(5-6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1유형 승인 학생	400,000	
		4종: 국가장학소득분위(7-9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1유형 승인 학생	300,000	
6. 공로장학금	공로장학금 1종~4종	1종:총학생회장(1명)	1,000,000	생활비 장학금 :수혜인원은 활동여부에 근거하여 지급
		2종:총학부회장(1명)	600,000	
		3종:예수대신문사편집국장(1명)방송국장(1명),총학생회총무(1명) 총대의원회의장(1명) 캔들합창단 회장(1명), T&L찬양단장(1명) (총6명)	400,000	
		4종:총학생회부장(5명),총대의원부의장(1명),예수대신문사총무(1명)방송국총무(1명),과대표(8명),기숙사총장(3명) 캔들합창단:총무,회계,음악부장,반주자(4명) T&L찬양단: 부회장,총무,회계,서기,인도자(5명) (총28명)	300,000	

장학명	종류	선발 기준	금액	비고
7. 디아코니아 장학금	디아코니아 장학금	학교의 예배 및 신앙교육을 돕는 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 (교목실 추천) (15명)	200,000	생활비 장학금
8. JU봉사 장학금	JU봉사장학금	지역협력센터 추천,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봉사 시간이 가장 높은 자(3명)	300,000	생활비 장학금
9. 특별장학금	사회복지학부 특별장학금	폐과 결정된 사회복지학부 학생	등록금 전액면제	국가장학금 제외하고 지급
10. 목회자 가족장학금	목회자 가족장학금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배우자, 자녀 중 미자립교회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1,000,000	
11. 형제자매 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우리 대학에 자매.형제 2인 이상 모두 재학인 학생 중 1명	500,000	
12. 사회배려 학생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통일부(하나원)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	교비, 국비 50% 전액지급	
	장애대학생 장학금	본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학생	1,000,000	
	다문화가정 학생장학금	다문화가정증명서 제출 학생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	1,000,000	
13. 만학도장학금	만학도장학금	학기 개시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자	300,000	
14. 국가근로 장학금 (교비대응)	국가근로장학금 (교비대응)	사회배려 학생 도우미 활동 학생(도우미활동시간 80시간 기준)	국가근로 장학대응	생활비 장학금
15. 사회배려 학생도우미 장학금	사회배려학생 도우미장학금	사회배려 학생 도우미 활동 학생(도우미활동시간 80시간 기준)	800,000	생활비 장학금
16. 역량장학금	역량장학금	학생역량 프로그램 참여 우수학생 각 학년별(1~3학년) 1명(총 3명)	300,000	생활비 장학금

② 외부기탁장학금

장학명	종류	선발 기준	금액	비고
예수병원장학금	예수병원	주문식교육 우수학생 선발(기탁기관 선발 기준)	500,000	생활비 장학금
예수대학교총동문회 장학금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후순위자 (교내성적우수 장학생은 선발에서 제외)	500,000	
전북대학교병원 동문장학금	전북대학교병원 동문		500,000	
전주모악로타리	전주모악로타리	동아리 지도교수 추천(기탁기관 선발 기준)	지정금액	생활비 장학금
충민교회장학금	충민교회	교회 출석 중인 저소득층학생 기탁기관 선발 기준 또는 기탁기관 지정 선발	지정금액	생활비 장학금
성광교회장학금	성광교회			
그외 기관 장학생 선발장학금	그외 기관 장학생 선발	기탁기관 선발 기준 또는 기탁기관지정 선발	지정금액	

[별지 제1호 서식]



교내장학금 신청서

학 부 명		학 년	
이 름		학 번	

증명서류 <원본, 발급은 3개월이내>서류만 인정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장학금 종류	증빙서류	체크(O)
1. 만학도장학금	1)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2. 목회자 및 선교사 가족장학금	1) 노회미자립교회증명서(선교사파송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증명서	
3. 형제자매장학금	1) 주민등록등본 2) 재학증명서 2명	
4. 장애대학생장학금	1) 장애인증명서	
5. 다문화가정장학금	1) 다문화가정증명서	
6. 보훈장학금	1) 신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전적대학포함 총 8회만 수혜가능]	2) 계속 증빙서류 없음	
7. 북한이탈주민장학금	1) 신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전적대학포함 총 8회만 수혜가능]	2) 계속 증빙서류 없음	
8.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1)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9. 공로장학금 4종 (학부과대표) [3월 추가기간 신청]	() 학부, () 학년	

본인은 20 학년도 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장학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예수대학교 장학위원회 귀중